

[미국 환경규제 소식]

# 美 하원,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 통과

지난 6월 26일 미 하원에서 1,300 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(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; H.R. 2454)이 찬성 219 대 반대 212표로 통과되었다. 44명의 민주당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행사했지만, 천신만고 끝에 8명의 공화당 의원 표 확보에 성공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.

마진폭이 7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안 지지 기반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, 온실가스 방출량에 상한선을 책정한 최초의 법안 통과라는 점은 높이 살만 하다. 빨라도 올 연말에나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현 행정부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여 5부 능선은 넘었다는 점도 상당한 쾌거로 평가된다.

이번에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## ※ 법안 주요 내용

- ▶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, 2020년까지 17%, 2050년까지 83% 감축 목표 달성
- ▶ 발전소, 공장, 정유시설, 전기/천연가스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배출가스제한(농업부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)
- ▶ 화석 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여타 6가지 온실가스(메탄, 일산화질소, 수소불화탄소, 과불화탄소, 육불화황, 삼불화질소) 통제
- ▶ 오프셋(offsets)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 방출을 허용하되, 매년 허용 가능한 총 오프셋 크레딧은 20억 톤으로 제한. 국내와 외국 오프셋 크레딧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(국내 크레딧 소진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 크레딧을 최대 15억 톤까지 확대 가능)으로 하며, 오프셋 크레딧 5톤 당 온실가스 방출량 4톤이 상쇄되는 것으로 함
- ▶ 신규 석탄 발전소에 한층 더 엄격한 성능 기준 부과. 동 발전소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연간 10억 달러씩 10년간 징수
- ▶ 소매 전기 공급회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의 6%이상을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절감분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, 매년 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20년까지 20%로 확대 (에너지 절감분은 최대 5%까지만 인정)
- ▶ 신규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2012년까지는 30%, 2016년까지는 50% 이상 강화토록 기준 수립
- ▶ 국제 기후협약이 2018년 1월까지 발효되지 않을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美 대통령은 미국에 상응하는 배출량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특정 제품에 국경 조정세(border adjustment: 관세)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. 단 의회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얻어야지 만이 관세 부과 유예 가능

## 국경 조정세 조항, 녹색 보호무역주의 우려

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하원 통과 직후,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금번 법안이 미국 에너지 정책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치하했다. 그러나 일명 녹슨 지대(rust belt: 철강이나 중공업 밀집 지대) 의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된 국경조정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WTO 위반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.

※ WT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,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조치 부과 시 “기후변화정책의 명시된 목적과 국경 조치 간 상관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야 하고”, “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제무역에 제약을 뒤서는 안 된다”고 명시했다.

9월 28일을 시한으로 하여 하원과는 별도 버전의 기후변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전반적으로는 하원 버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하원 법안 내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정세 조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.

변경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, 적어도 국경조정세 부과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재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.

인도 등 신흥 개도국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도 이와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. 인도 환경부 장관이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인도 방문을 기회로 삼아, 자국산 수출품이 미

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탄소세(carbon tariffs)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,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인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.

그러나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소누출로 인한 미국 제조업 타격 보호를 위해 국경세 부과방침을 고수하고 있어, 동 조항의 최종 포함 여부 및 변경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

펜실베이니아주, 미시간주, 미네소타주,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제조업 및 석탄산업에 기반을 둔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8월 6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, 기후변화법안에 국경세 조항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 통과를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.

## 상원 통과, 하원법안과의 조율(mark-up) 거치면 2010년 중에나 최종법안 통과 전망

한편 법안 발효 시 업계 및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을 우려한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상원 통과는 하원 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.

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하원 법안과 조율, 다시 한 번 양원서 조율된 법안 통과, 대통령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될 소지가 크고 실제 최종 법안 통과는 빨라야 내년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. 